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32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 박용갑·복기왕·윤종군

문진석 · 정준호 · 한준호

박정현 • 이훈기 • 안규백

추미애 · 조승래 의위

(119]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등의 자동차의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 보훈과 환경, 그리고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 및 보훈·다자녀 가구·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등 사회 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 나.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 다.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29조제4항).
- 라.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 물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66조제3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 ①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	
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	
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	
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	
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u>2024년</u> 12월 31일까지 면제한	<u> 2027년</u>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	위한 감면) ①
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	
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 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 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 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 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 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 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 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 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 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 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 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 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 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u>2027년</u>

- 1. ~ 4. (생 락)
-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 1. ~ 3. (생 락)
- ③ ④ (생 략)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면) ① ~ ③ (생 략)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 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상이등급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

1. ∼ 4. (연행과 숱음)
②
000713
2 <u>027년</u>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4

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 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 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 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제17조에 따 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 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 락)

<u>2027년</u>
1. ~ 4. (현행과 같음)

- (5) (생 략)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 략)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 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
 면한다.
 -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 ④·⑤(생략)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1000-1-2101101112
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2027년

2
2027년
<u> </u>
4 · ⑤ (현행과 같음)